

# 사단법인 새중앙총회신학원·연구원 정 관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통하여 겨레의 속죄구원과 민족교화와 복지국가를 이룩하며 전 인류의 행복을 증진함에 이바지 하고자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입각하여 고등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새중앙총회신학원(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학원을 설치 경영한다.

- 새중앙총회신학원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시 송파구 가락로 36길 7에 둔다.

제5조(정관의 변경) ①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2 장 자 산 과 회 계

### 제 1 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20.10.23]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 2 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 한다.

② 법인 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학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2(예 ■ 결산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05.21]

② 제1항에 의한 공시는 본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시에 관한 필요한 사

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 3 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

#### 제 3 장 기 관

#### 제 1 절 임 원

제2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11인(이사장 1인 포함)
2. 감 사 2인

② 삭제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 사 4년
2. 감 사 2년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24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 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로 해임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임원은 마태복음 28장18절-20절에 근거한 성서적 신앙을 가진자로서 10년 이상 세례교인의 의무를 다하고, 건학이념을 구현할 의지를 가진 자 이어야 한다.

제24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 받은 자(단, 이단종파 제외)로 민·형사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설치·경영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

제24조의3(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3인으로 한다.

제24조의4(개방이사의 선임) ①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 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24조의5(추천 감사의 선임) ①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이하 “추천감사”라 한다)를 선임한다.

② 전항에 의한 추천감사의 선임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4(개방이사의 선임)를 준용한다.

제24조의6(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새중앙신학원 평의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결정은 위원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 조에 규정된 친

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이사 정수의 3분의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6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개정 2005.10.5]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2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상근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상근이사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8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0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③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이나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겸할 수 없다

## 제 2 절 이 사 회

제31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사단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단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 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의2(이사회 회의록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의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3조(이사회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4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 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 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5조(이사회 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한 때
2.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제 3 절 평의원회

제35조의2(대학평의원회 설치) 학원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5조의3(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2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4인
2. 직원 3인
3. 학생 2인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인

제35조의4(평의원의 위촉) 평의원회 위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모임인 직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 및 대학원 원우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35조의5(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을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5조의6(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되는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 4 장 수 익 사 업

제36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원
- 2.
- 3.
- 4.

제37조(수익사업의 명칭) 제36조 제1호의

제38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제39조(관리인)

## 제 5 장 해 산

제40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42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 제 6 장 교 직 원

### 제 1 절 교 원

#### 제 1 관 임 용

제43조(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학원의 장 이외의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이 정관 제43조 이하를 적용할 때에는

대학교육기관의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을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 조건을 정하여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1. 근무기간  
가. 교수

라.

2. 급여 : 정관 제49조로 정하는 보수 및 수당
3. 근무조건 :
4. 업적 및 성과 :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개정 2012.9.10]

제43조의2(임시교원) ①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 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임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제43조의3(정년) ① 제43조 제1항 이외의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개정 2002.11.21]

② 교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③ 연구업적이 뛰어나고 대학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의4(전형결과 공개) ①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 제 2 관 신분보장

제44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 7호 및 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 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한국성서서교회에 임시로 고용될 때
7.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제 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8.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제45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 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자녀 1명에 대하여는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으며,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육아휴직 대상 아동은 제외)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는 휴직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한다.
7. 제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4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4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6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휴직 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제44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7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4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 ② 제44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임용권자는 정관 제 45조6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8조의2(면직의 사유) ①사립학교법 제58조에 의하여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②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59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6.8.18]]

제49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고난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선고, 징계 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 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의 2(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50조의 3 (의원면직의 제한)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②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11.29]

###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1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대학교육기관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 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53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5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4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57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학교 소속 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8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9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의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 2항 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1명이상 포함 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 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학교 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59조의2 (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학교법인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9조 3의 비밀누설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59조의3 (비밀누설의 금지) ①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60조 삭제

제61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63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3조의 2(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  
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3조의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  
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4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  
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  
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5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  
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징계처분권을  
법인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  
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6조(징계의결시의 정상 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함에 있  
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  
상을 참작 하여야 한다.

제66조의 2(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  
터 3년(단,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67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8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 등으로 정한다.

### 제 3 절 재심위원회 삭제

제69조 내지 제82조 삭제

### 제 4 절 사무직원

제83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고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84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84조의 2 (일반직원의 정년) ① 법인 및 학교의 일반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3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당해직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수급사정, 담당하는 직원의 직무의 특수성, 직무수행능력,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학교의 일반직원의 경우엔 학교장의 제청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직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85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법인규칙 또는 학교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6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87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법인규칙 또는 학교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88조(징계)[개정 2016.11.29]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징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가 따로 세칙 등으로 정한다.

## 제 7 장 직 제

### 제 1 절 법 인

제89조(법인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일반직 3급이상으로 보한다.

② 법인사무국에는 총무과와 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일반직 4급이상으로 보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 2 절 대 학 교

제90조(총장 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대학교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0조의2 (대학원장 등) ①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보육대학원에 각각 원장을 둘 수 있다.

② 각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③ 각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각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④ 대학원의 하부조직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1조(하부조직) ① 대학교에 일립(신앙)교육부/교목실, 전공교육부, 행정본부를 두고 총장직속으로 기획실, 평가감사실, 대외협력실,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일립(신앙)교육부에 교목실, 신앙훈련과, 성서적세계관교육과, 학생생활상담센터, 밀알사회봉사단을 둔다.

③ 전공교육부에 기초교육원, 성서학과, 사회복지학과, 영유아보육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간호학과, 교수학습센터, 교직부, 대학교학처를 두며, 기초교육원에는 영어교

육센터를 두며, 대학 교학처에는 교학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④ 행정본부에 입학취업처, 사무정보처, 도서관, 일립생활관, 출판부, 성폭력상담실, 예비군중대를 두며, 입학취업처에는 입학관리팀, 취업지원센터, 국제교류팀을 두고, 사무정보처에는 사무관리팀, 시설관리팀, 전산지원팀을 둔다

⑤ 본부장, 처장, 실장, 국장, 단장, 원장, 관장은 조교수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 6급이상으로 보하고 센터장, 과장, 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 8급이상으로 보한다

⑥ (삭제)

⑦ 삭제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⑨ 대학교의 장은 위 규정에 불구하고 팀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부 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92조(부속시설) ① 대학교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의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1. 부설연구기관 : 일립신학연구소, 영유아보육연구소, 사회복지연구소, 인터넷신기술연구소

2. 부속교육기관 : 밀알훈련센터, 평생교육원, 대학어린이집, 대학교회

3. 삭제

4. 수탁기관 : 복지관, 보육시설 등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이상 교원 또는 일반직 7급이상으로 보한다.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 및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3조(도서관) ① 도서관에 수서과, 열람과를 두며 수서과장은 참사로 보하고 열람과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 3 절 정 원

제94조(정원) ① 법인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과 같다. [개정

2009.2.10]

② 대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별표2와 같으며, 직렬·직종·직급별 정원은 직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2.10]

## 제 8 장 보 칩

제95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96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97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임 기	주 소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원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학원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임용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 ⑤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일반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새중앙총회 소속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새중앙총회 소속 일반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③ (학원의 장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한국성서신학교 교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새중앙총회신학원은 학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 ④ (폐지되는 학원의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폐지되는 새중앙총회신학원은 교육관계 법령과 학칙을 적용하며, 수업·학사 및 학적부 등에 관하여는 새중앙총회신학원에서 관리한다.
- ⑤ (폐지되는 학교의 재산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폐지되는 한국성서신학교의 교육용 재산 및 권리·의무는 새중앙총회신학원가 이를 승계한다.